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한강에셋자산운용㈜

2. 제재조치일 : 2025. 7. 3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3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감사업무의 독립성·충실성 확보 필요

(가)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 필요

금융회사의 감사 및 감사보조조직은 경영진의 직무를 견제·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내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

하지만 한강에셋자산운용㈜(이하 '회사')는 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는 감사가 주관하고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감사 규정상으로는 감사계획 수립, 감사 실시 업무 총괄 등 감사업무에 대해 경영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고, 특별감사는 경영진 또는 경영기획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업무가 경영진 또는 경영기획본부장의 주관하에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,

회사는 감사업무에 대해 경영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거나 특별감사를 경영진 또는 경영기획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수행토록 하는 등 감사 및 감사보조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

(나) 감사업무의 충실성 확보 필요

금융회사의 감사 및 감사보조조직은 내부감사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,

회사의 감사업무는 검사대상기간 중 정기 종합감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평가만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,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, 감사 대상에 해외 자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감사 활동이 미흡하므로,

회사는 감사 및 감사보조조직이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특별·수시감사를 수행하고 리스크에 기반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한 감사 활동을 하게 하는 한편, 해외 자회사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체 감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2) 자기주식 관리 및 처리방안 마련 필요

회사는 상법상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,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

다만, 회사는 2022.12.21.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보통주 자기주식 3만주를 2023.1.25. 취득하였으나,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소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관리 및 처리 방안 마련 없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

(3) 자회사와의 용역 계약 관리 강화 필요

회사는 용역 계약 체결시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충실히 제공되었는지 검토하고 계약상 지급 조건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

그러나 회사는 2019.2.8.~2024.1.6. 기간 중 美 자회사 Hangang AM America와 해외 부동산 관련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조건으로 투입시간에 투입시간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, 일부 용역 산출물이 계약상 용역

산출물이 아님*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산출물로 인정하고, 용역계약서와 다르게 투입시간에 따른 비용 지급이 아닌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월별 운영비용 전체를 지급하였으므로,

* 자회사의 자체 업무 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용역 산출물에 해당

따라서 회사는 제공받은 용역 산출물에 대한 적절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, 용역 투입시간에 대한 관리 및 사후 검증 후 투입시간에 따라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자회사와의 용역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